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신설 2020. 5. 27.>

보상금 결정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개월 이내

저작물을 이용한 문화시설		
저작물의 제호(제목)	([] 여러 건 신청: 총 건)	
저작물의 종류		
저작물의 형태	☐ 책 ☐ 인쇄물 ☐ 사진 ☐ CD ☐ DVD ☐ USB ☐ Tape ☐ 비디오테이프 ☐ 기타 ()	
신 청 사 유	※ '당사자 협의 결렬' 등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.	
보 상 요 청 금 액	일금 _____원 (₩ _____)	
보 상 금 액 산 정 근 거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 ※ 신청인이 문화시설인 경우 문화시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※ 신청인이 문화시설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.
	주소	전화번호
대리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「저작권법」 제35조의4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「저작권법」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의견 수렴	→	보상금 결정	→	보상금 결정서 발급
신 청 인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 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